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연 월 일	2020. 9.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우체국’ 명칭 사용료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회계에서 우편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험료 납입 수단이 다양해져 필요성이 낮고 횡령·유용 등 보험사고 가능성이 높은 방문수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 명칭 사용료’ 문구 신설

- 1) 예금·보험의 증대 활동에 ‘우체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신설
(제4조제1항제3호)
- 2) ‘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을 ‘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로 바꾸고,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신설(제8조제1항제2호)
- 3) ‘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을 ‘보험 증대활동의 경비’로 바꾸고,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항목 삽입(제62조제1항제2호)

나. 방문수금 제도 폐지

- 1) 보험료의 납입 방법 중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삭제
(제47조제3항제1호)
- 2)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에서 수금자 보상금 삭제 및 유지관리 보상금 수정(제6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의 “수금”을 “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체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 “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을 “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경비의 종류와 지급대상은”을 “경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 각 목의 모집경비”로 하며, “1”은 “가”, “2”는 “나”, “3”은 “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제47조 제1항의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를 “납입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의 “수금”을 “납입”으로 한다.

제61조 “보험료의 수금”을 “수납”으로 한다.

제62조 “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을 “보험 증대활동의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1항 법 제8조와제2항에 따른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 모집 등 영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 경비”라 한다)

2.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아울러 같은 조 제1항의 “법 제8조와제2항에 따라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를 제2항 “영업촉진경비”로 한다. 또한, 제1항제2호의 “수금”을 제2항제2호의 “수납”으로 한다. 현행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제3항 “영업촉진경비”는 제4항 “보험증대활동의 경비의”로 한다.

제63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방문수금 외의 보험료 수금방법으로”를 “보험료를 수납하여”로 한다.

별표 2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에서 수급자보상금 항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u>수납</u>하는 행위 2. (생략) <u><신 설></u> ② (생략)	제4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① - ----- ----- ----- -----. 1. ----- ----- <u>수납</u>----- - 2. (현행과 같음) 3. <u>우체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u> ② (현행과 같음)
제8조(<u>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u>)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u>경비의 종류와 지급대상</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개인모집경비</u> :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u>관서모집경비</u> : 예금을 모집한	제8조(<u>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u>) ① - ----- ----- ----- <u>경비</u>는 -----. 1. <u>다음 각 목의 모집경비</u> <u>가.</u> (현행 제1호와 같음) <u>나.</u> (현행 제2호와 같음)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3. 그 밖의 모집경비 :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신 설> ② (생략)	다. (현행 제3호와 같음) 2. <u>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u>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u>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u> 해당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u>보험계약자를 방문한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u> 2. ~ 5. (생략) ④ (생략) ⑤ 보험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제47조(보험료의 납입) ① ----- ----- ----- <u>납입방법으로</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u>(삭제)</u> 2.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보험료 <u>수금방법</u>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u>납입</u>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u>보험료의 수금</u>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 ----- ----- <u>수납</u> ----- -----. 1.~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u>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u>) <u><신설></u>	제62조(<u>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u>) ① <u>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보험 모집 등 영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u> <u>2.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u>
① <u>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8조와제2항에 따라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영업촉진경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② ----- <u>영업촉진 경비</u> ----- ----- ----- ----- --.

1. (생략) 2. <u>수급한</u>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u>우정사업본부장은</u>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한다. 1.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 보험의 모집 및 수급 실적 2. 지방우정청 : 지방우정청 소속 관서의 실적 ③ <u>영업촉진경비의</u>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와 그 밖에 영업촉진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u>수납</u> -----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u>보험증대활동의 경비의</u> ----- ----- ----- -----.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u>수급자 보상금: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급한 자</u> 4. <u>유지관리 보상금: 방문수급 외의 보험료 수급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자</u>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삭제</u>) 4. ----- <u>보험료를 수납하여</u>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별표 2] <u>보상금 지급률의 범위</u>(제64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tr><td>(생 략)</td><td></td></tr> <tr><td>(생 략)</td><td></td></tr> <tr><td>(생 략)</td><td></td></tr> <tr><td>수급자보상금</td><td>수급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내</td></tr> <tr><td>(생 략)</td><td></td></tr> <tr><td>(생 략)</td><td></td></tr> <tr><td>(생 략)</td><td></td></tr> <tr><td>(생 략)</td><td></td></tr> </table>	(생 략)		(생 략)		(생 략)		수급자보상금	수급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내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2] <u>보상금 지급률의 범위</u>(제64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tr><td>(현행과 같음)</td><td></td></tr> <tr><td>(현행과 같음)</td><td></td></tr> <tr><td>(현행과 같음)</td><td></td></tr> <tr><td>(삭 제)</td><td>(삭 제)</td></tr> <tr><td>(현행과 같음)</td><td></td></tr> <tr><td>(현행과 같음)</td><td></td></tr> <tr><td>(현행과 같음)</td><td></td></tr> <tr><td>(현행과 같음)</td><td></td></tr> </tabl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 략)																																	
(생 략)																																	
(생 략)																																	
수급자보상금	수급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내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